

한-몽 CEPA 원칙적 타결

- 한-몽골 CEPA 원칙적 타결로 교역·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
- 한때 협상 교착상태 직면, 정상회담을 레버리지로 극적 타결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7월 9일(목)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민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인 「한-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CEPA*)」 협상의 원칙적 타결**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.

*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

** 상품 시장개방,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사실상 협상은 종료되었지만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

【주요 경과】

한-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·유통·인프라·금융·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.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'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,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일-몽 EPA('16년 발효)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.

양국은 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'26년 6-7월 중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하였으나,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. 그러나,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옹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상 방문 당일인 7월 9일 양국 정상인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.

【한-몽골 CEPA의 의의】

한-몽골 CEPA는 '16년 발효한 일-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, 양국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, 산업, 인프라,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. 특히 한국의 제조·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·성장 잠재력이 결합하여 협력을 확대할 경우,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.

【핵심 성과】

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, ②유통협력 강화 및 K-소비재 진출, ③산업·투자 협력 다변화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.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%이상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였다.

* 자유화율 : (한국) 품목수 96.3%, 수입액 94.5% / (몽골) 품목수 94.4%, 수입액 90.9%

< 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>

몽골은 구리·몰리브덴·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.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(2~5%)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,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.

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·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하였다. 이를 통하여 몽골 내 「희소금속협력센터(25.12월 개소)」 등 그간 추진해 온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,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② 유통협력 강화 및 K-소비재 진출 확대 >

이미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·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. 또한, 몽골 현지에는 이미 CU(603개소), GS25(299개소), 이마트(6개소)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는바, 이번 관세

철폐로 K-소비재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으로써,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-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-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. 특히,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, 라면,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-뷰티·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.

* 화장품 : 즉시철폐 / 라면, 조미김 : 단기철폐(5년)

* 對몽골 화장품 수출(백만불, 전년비): '23년31(29%↑) → '24년37(19%↑) → '25년45(22%↑)

동시에 K-뷰티·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,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. 반면 농축수산물에는 국내 민감성을 고려,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.

< ③ 산업·투자협력 다변화 >

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, 금융,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하여,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. 특히 화물차·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*가 철폐되어,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* 화물차, 車부품 : 즉시철폐 / 중고차(연식 4~6년) : 단기철폐(5년) / 의약품 : 즉시철폐

* 對 몽골 수출(백만불, '20→'25) : 화물차 18→22, 건설중장비 1→29, 의약품 15→28 등

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“한-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, 공급망,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”이라며, “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【향후 계획】

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,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.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협상총괄과	책임자	과 장	이민영 (044-203-5830)
		담당자	사무관	목연주 (044-203-5833)
	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상품과	책임자	과 장	고장원 (044-203-5790)
		담당자	사무관	유소영 (044-203-5794)
	통상협정교섭관 통상협정무역규범과	책임자	과 장	이은희 (044-203-5820)
		담당자	사무관	이다애 (044-203-5826)
주무관			김용찬 (044-203-5829)	



1. 추진배경

□ 양국은 활발한 인적교류와 지리적 근접성 등 고려시 경제·산업·공급망 관련 상호보완성이 높은 전략적 파트너이나, 현재 **교역·협력 수준은 이에 미달**

- * ① 항공 연결성 증가: 주 48회 직항 운영(인천 40, 부산 6회, 청주 2회)
- ② 인적 교류: (몽→한) 인구 10%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(비공식), (한→몽) 몽골 방문 외국인 관광객 2위
- ③ 물적 교류: 한국 유통기업 진출(CU 603개소, GS 299개소, 이마트 6개소 등)

○ 한-몽 교역*은 '21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전체 교역 규모는 아직 제한적**이며, 수출입 구조도 한국의 對몽 수출 중심으로 형성

* 한-몽 총교역액(억불) : ('21)4.1 → ('22)4.6 → ('23)5.4 → ('24)6.2 → ('25)6.9
(25년 기준 대몽골 수출은 6.6억불, 수입은 0.3억불로 6.3억불 무역수지 흑자 기록)

** 한국의 對몽골 수출은 연 6억불 규모(자동차·기계·소비재 중심, 몽측 수입액의 약 5% 차지)

□ 이에 한-몽 CEPA 체결을 통해 양국 간 **교역·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** 하고, **공급망·디지털·서비스·산업협력** 등으로 **협력 범위를 넓힐 필요** 有

○ 몽골은 리튬·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자원*과 높은 경제성장세(연 5% 내외)로 **공급망 협력 및 시장 다변화**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

* 구리 매장량 세계 12위(약 6,100만톤), 희토류 세계 2위권(약 3,100만톤) 등

○ 몽골은 “제3의 이웃 정책”을 통해 **협력국 다변화***를 추진 중인바, 한국은 몽골에 있어 對중·러 의존 완화를 위한 주요 협력국

* 몽골 전체 수출의 89.4%가 중국에 집중, 수입 또한 중국(약 26%)·러시아(약 22%) 차지

2. 협상 경과 및 현황

□ (경과) 4차례 공식협상('23.12~'24.11) 이후 몽측 업계 우려*로 협상 중단, 7월 정상회담 계기 타결 목표로 5차 협상(26.6월) 재개, 6차 협상(7.1~3) 진행

* ▲양국간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이견, ▲몽-일 EPA 발효('16) 후 몽골의 대일본 무역적자 확대('16년 3억불 → '25년 11억불)에 따라 몽골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

○ 6차 협상에서도 양국 핵심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, 통상교섭본부장-경제개발부장관 화상회의(7.8)에서 세 차례 패키지딜 논의를 거쳐 시장개방안 타결

□ (현황) 상품양허, 서비스·투자 등 협정문 대부분 타결, 일부 챕터에 대한 기술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 예정

3. 주요 성과

□ (상품 시장개방) 양측은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%를 상회하는 높은 자유화 수준* 달성

* 자유화율 (한국 품목수 기준 96.3%, 수입액 기준 94.5% (몽골 품목수 기준 94.4%, 수입액 기준 90.9%

○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인 화물차, 건설중장비, 의약품, 일부 담배 및 중고차, K-소비재**(화장품·라면·조미김)의 관세 단기철폐(즉시·5년) 확보

* 對 몽골 수출(백만불, '20년→'25년)

- (화물차) 18→22, (건설중장비) 1→29, (의약품) 15→28, (화장품) 17→45, (라면) 4→10 등

** CU-GS25·이마트 현지 진출로 수출 증가세인 라면·조미김 5년 철폐

○ 몽골에 대해서는 구리·몰리브덴·희토류 등 광물(2~5%)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

- 몽측의 향후 수출유망 품목(육류, 유제품 등)은 장기철폐(10년), 우리 전통적 민감품목(쌀, 천연꿀, 신선 감자·양파·마늘 등)은 양허 제외

□ (원산지) 주력 수출품(K-뷰티·푸드·자동차·석유제품·담배 등)의 수출 확대에 유리한 원산지 기준*과 중고차 원산지 증빙 간소화 기반** 마련

* 대부분 4단위/6단위 세번변경 또는 역내부가가치 40% 이상

** 수출 중고차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하여, 우리 기 체결 최초로 차대번호 등을 활용한 중고차 원산지 증빙 간소화 규정 포함

○ 반면,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,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하고, 특히 인삼음료·조미김은 역내산 요건을 적용하여 국내 원재료 활용 유도

4. 기대효과

① (수출경쟁력 제고) 화물차·車부품, 의약품, K-뷰티·푸드 등 관세철폐로 우리 주력품목 및 한류 기반 신흥 품목 수출 증진

② (공급망 안정) 광물(2~5%) 수입관세 즉시철폐, 에너지·광물 양국 간 협력 근거 마련

③ (포괄적 협력) 인프라 건설, 금융, 의료 산업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명문화하여 몽골 산업 고도화 지원,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 마련 등

참고 2

한-몽골 CEPA 상품양허 주요내용

□ 양측 자유화 수준

- 양측은 품목수·수입액 90%를 상회하는 높은 자유화 수준 달성
 - **우리측 자유화 수준: 품목수 기준 96.3%, 수입액 기준 94.5%**
 - **몽골측 자유화 수준: 품목수 기준 94.4%, 수입액 기준 90.9%**

구분	우리측 양허				몽골측 양허			
	품목수(개)		수입액(백만불)		품목수(개)		수입액(백만불)	
즉시 철폐	8,115	71.9%	39.0	93.6%	5,502	86.5%	330.8	88.5%
무관세	2,239	19.8%	26.3	63.0%	78	1.2%	8.7	2.3%
유관세	5,876	52.0%	12.8	30.6%	5,424	85.3%	322.1	86.2%
5년 철폐	746	6.6%	0.04	0.1%	139	2.2%	7.3	2.0%
5년 내 철폐	8,861	78.5%	39.1	93.7%	5,641	88.7%	338.2	90.4%
10년 철폐	2,014	17.8%	0.4	0.9%	362	5.7%	1.7	0.5%
철폐 소계	10,875	96.3%	39.4	94.5%	6,003	94.4%	339.9	90.9%
TRQ	2	0.0%	0.2	0.4%	9	0.1%	5.3	1.4%
철폐+TRQ	10,877	96.3%	39.6	94.9%	6,012	94.5%	345.2	92.3%
양허 제외	416	3.7%	2.1	5.1%	347	5.5%	28.8	7.7%
전체	11,293	100.0%	41.7	100.0%	6,359	100.0%	374.0	100.0%

☞ 양측은 발효 즉시 우리 71.9 및 몽골 86.5%의 품목에 무관세 적용 예정

□ 우리측 양허 주요내용

- (광물) 구리·몰리브덴·희토류 등 광물(2~5%)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 적용하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
 - * 우리 국가별 광물(금속·비금속) 수입 비중('25년) : 호주 33% 멕시코 8% 몽골 0.04%
- (의류) 몽측 주력 수출품목인 캐시미어 의류*에 대해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여 소비자 후생 확대에 기여
 - * 카디건, 양말, 장갑, 재킷, 코트 등
- (농임산물) 몽측 주요 수출품은 국내 민감성 고려, 염소고기*·유제품(치즈·버터) 장기철폐(10년)하고, 잦은 물량 제한**(TRQ, 10톤)하여 개방
 - * 다만, 양·염소고기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수입금지 지역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 가능하며, 현재 몽골은 수입금지지역에 해당
 - ** 신선젓(TRQ 10톤 이내, 관세율 30%), 냉동젓(TRQ 10톤 이내, 관세율 0%)
- 쌀, 천연꿀, 표고버섯, 녹용, 신선 감자·양파·마늘 등 전통적 민감 품목은 양허제외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

□ 몽골측 양허 주요내용

- **(담배)** 현지 수요가 높은 **퀄런담배**(타르 함량이 11mg 미만, 관세율 30%)에 대해 **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**하여 시장접근 확보
 - * 몽골의 국가별 퀄런 담배 수입액 비중('21-23년 평균) : 韓 52% 러 21% 日 9%
- **(화물차)** **소 품목**(관세율 5%)에 대해 **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**를 확보하여, 주력 수출품목인 **5톤 이하 디젤 화물차** 등 수출 여건 개선
 - * 對몽골 화물차 수출 현황(백만불) : ('22) 18 → ('23) 23 → ('24) 29 → ('25) 22
- **(승용차)** 신차는 **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**를 적용하고, 연식 **4~6년 중고차*** 중 주력 수출품목**에 대해서는 **단기 관세철폐(5년) 확보**
 - * 우리 자동차 수출(78백만불) 중 중고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%('25년 기준)
 - ** 가솔린(6개), 디젤(3개), 하이브리드(1개), 전기(1개), 가스(3개)
- **(자동차부품)** 중고차 수리·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 수출 확대되고 있는 **자동차부품**(관세율 5%) **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** 확보
 - * 對몽골 자동차부품 수출 현황(백만불) : ('22) 9 → ('23) 9 → ('24) 10 → ('25) 11
- **(건설중장비)** **광산 개발 프로젝트** 관련 수주 확대되고 있는 **광산용 장비를 포함한 건설광산기계**(관세율 5%) **발효 즉시 무관세** 확보
 - * 對몽골 건설광산기계 수출 현황(백만불) : ('22) 16 → ('23) 21 → ('24) 31 → ('25) 29
- **(의약품)** 몽골 내 **열악한 의료 인프라**로 수입 수요가 높은 **의약품**(관세율 5%) **발효 즉시 무관세** 확보
 - * 對몽골 의약품 수출 현황(백만불) : ('23) 17 → ('24) 22(35%↑) → ('25) 28(31%↑)
- **(K-뷰티)** 한류 영향으로 우호적 이미지 구축하며 수출 급성장세를 보이는 **기초·메이크업용 화장품**(관세율 5%) **발효 즉시 무관세** 확보
 - * 對몽골 화장품 수출(백만불, 전년비): '23년 31(29%↑) → '24년 37(19%↑) → '25년 45(22%↑)
- **(K-푸드)** 국내 유통망(CU·GS25·이마트), 프랜차이즈 등 현지 진출로 수출 증가세인 **가공식품**(라면·조미김, 관세율 5%)* **관세철폐(5년)**
 - * 이외에도 신선 과일(사과·배·포도, 5%) 및 야채(오이·토마토, 20%) 관세 즉시철폐
 - 과자·빵(관세율 5%), 빙과류(15%)에 대해서는 TRQ로 시장접근 확보
 - * 품목별 특혜세율 적용 쿼터 물량 : 과자·빵(700톤 이하), 빙과류(800톤 이하)

참고 3

한·몽골 수입액 상위 품목 양허 현황

순위	한국 양허 (對몽골 주요 수입품)				몽골 양허 (對몽골 주요 수출품)			
	품목명 (HS 10단위)	관세율 (%)	수입액 (백만불)	우리측 양허	품목명 (HS 8단위)	관세율 (%)	수출액 (백만불)	몽골측 양허
1	저지·카디건 (캐시미어 편물)	13	3.6	즉시철폐	퀄런(담배 함유)	30	34.2	즉시철폐
2	형석 가루	2	1.9	즉시철폐	화물차 (디젤, 5톤이하)	5	17.0	즉시철폐
3	녹각	20	1.2	양허제외	윤활유와 그 밖의 기름	5	16.9	즉시철폐
4	솔·스카프 (양모 편물)	13	0.7	즉시철폐	항공기용 제트연료유	5	16.8	즉시철폐
5	육(肉) 추출물	30	0.7	양허제외	건설중장비 (메커니컬서블 등)	5	15.6	즉시철폐
6	솔·스카프 (기타 방직용 섬유)	8	0.6	즉시철폐	기타 음료	5	7.9	양허제외
7	솔·스카프(양모)	8	0.6	즉시철폐	맥주	25	7.6	양허제외
8	조유(粗油)	5	0.5	즉시철폐	기타 화장품	5	6.9	즉시철폐
9	여성 바지 (양모 편물)	13	0.5	즉시철폐	기타 면류 (라면 등)	5	6.4	5년철폐
10	솔·스카프 (기타 편물)	13	0.4	즉시철폐	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	5	6.3	즉시철폐
11	여성 드레스 (양모 편물)	13	0.3	즉시철폐	기타 소스류 (된장 등)	5	6.1	즉시철폐
12	티셔츠(양모 편물)	13	0.2	즉시철폐	의약품(기타)	5	5.0	즉시철폐
13	제트연료유	3	0.2	양허제외	화물차(디젤, 5톤 초과 20톤 이하)	5	4.4	즉시철폐
14	저지·카디건(기타 방직용 섬유 편물)	13	0.2	즉시철폐	의약품 (기타, 액상)	5	4.1	즉시철폐
15	정제 구리(음극)	3	0.2	즉시철폐	위생타월·냅킨 등	5	4.1	즉시철폐
16	여성 오버코트 (양모 편물)	13	0.2	즉시철폐	등유	5	3.9	즉시철폐
17	저지·카디건 (양모 편물)	13	0.2	즉시철폐	면역물품(소매용)	5	3.6	즉시철폐
18	소(牛) 지방	2	0.2	즉시철폐	철구조물(기타)	5	3.6	즉시철폐
19	여성용 기타 의류 (기타 방직용 섬유)	13	0.2	즉시철폐	승합차(10~23인)	5	3.6	즉시철폐
20	오버코트·레인코트 (양모)	13	0.2	즉시철폐	중고의류·물품	5	3.5	양허제외
	(20대 수입소계)		12.8		(20대 수입소계)		177.6	
	수입합계		41.7		수입합계		374.0	

* 품목수 기준: (한국) HSK 2023, (몽골) HS 2023 / 수입액 기준: '21-'23년 평균

* 관세율 : '23년 WTO MFN 실행세율

참고 4

한-몽골 CEPA 상품양허 카테고리별 주요 품목

우리 양허		양허 단계	몽골 양허	
주요 품목	품목수		품목수	주요 품목
저지·카디건(캐시미어 13%, 기타 방직용 섬유 편물 13%, 양모 편물 13%), 말고기(27%), 형석(2%), 암염(1%), 석영(3%), 규암(3%), 공업용모래(3%), 정제구리(음극 3%), 조유(5%), 소(牛) 지방(2%), 순모사(8%), 비스킷(5%), 개사료(5%), 기타 설탕과자(8%), 기타 조제식료품(8%) 등	8,115	즉시 철폐	5,502	궤련(담배 함유 30%), 화물차(디젤, 20톤 이하 5%), 윤활유(5%), 항공기용제트연료유(5%), 건설중장비(5%), 의약품(5%), 등유(5%), 면역물품(5%), 화장품(5%), 기타소스류(5%), 딸기(5%), 참치캔(5%), 섬유판(5%) 등
나무로 만든 조립식 건축물(8%), 데어리 스프레드(8%), 소고기 가공품(72%), 감귤류 잼(30%), 전갱이 통조림(20%), 양고기(22.5%) 등	746	5년 철폐	139	승용차(연식 4~6년, 5%), 라면(5%), 조미김(5%), 모피의류(5%), 소시지(15%), 양배추(5%), 가지(5%), 송이버섯(5%), 목재(침엽수류, 활엽수류 등, 5%) 등
맥주(30%), 티백차(40%), 보드카(20%), 비타민주스(50%), 쌀과자(8%), 잣(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, 566.8% 또는 2664원/kg), 버터(89%), 가공치즈(36%), 염소고기(22.5%), 돼지고기(22.5%), 모차렐라·체다 치즈(36%), 송이버섯(30%) 등	2,014	10년 철폐	362	토탄(5%), 기타석탄(5%), 쇠고기(20%), 양고기(15%), 말고기(20%), 민물어류(5%) 등
	10,875	소계	6,003	
잣(껍데기를 벗긴 것, 566.8% 또는 2664원/kg), 잣(냉동, 30%)	2	TRQ	9	과자·빵(5%), 빙과류(15%)
	10,877	소계	6,012	
제트연료유(3%), 경유(3%), 녹각(20%), 육(肉)추출물(30%), 천연꿀(243% 또는 1864원/kg), 버터밀크(89%), 감자(304%), 양파(135% 또는 180원/kg), 마늘(360% 또는 1800원/kg), 표고버섯(40% 또는 1625원/kg), 기타 소금(8%), 기타건조어류(20%) 등	416	양허 제외	347	기타 음료(5%), 맥주(25%), 참기름(5%), 목제가구(20%), 귀금속(5%), 녹차(5%), 치즈(15%), 밀가루(5%), 둥(5%), 목재(침엽수류, 5%), 목이버섯(5%) 등
	11,293	총계	6,359	

* 품목수 기준: (한국) HSK 2023, (몽골) HS 2023